

착공연기신청서

-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
신청인	건축주		일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대지위치	지번			
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자	년	월	일
신청내용	착공예정일자	년	월	일
	연기사유			

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건축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안내			
제출하는 곳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 부서
첨부서류	없음		수수료 원

근거법규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2항	•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	---

유의사항

「건축법」 제11조 제7항, 제14조제5항	•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,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,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방법

- 지번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- 착공예정일자: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.
- 연기사유: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